

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소하천정비법」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점용료등의 미부과 기준 정비(안 제2조)

- 당초 : 600원 미만 점용료등 미부과
- 변경 : 2,000원 미만 점용료등 미부과

나. 「소하천정비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)

- 당초 : 부당이득금
- 변경 : 변상금

다. 점용료등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정비(안 별표 1, 별표 3)

라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하천정비법」, 「지방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”를 “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‘소하천정비법’ 제22조,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소하천정비법」 제22조에 따라”로, “토석, 모래, 자갈”을 “토석·모래·자갈”로, “부과, 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·모래·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(이하 “점용료등”이라 한다)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.

제2조제1항 단서 중 “1건만의 점용료등이 600원”을 “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‘소하천정비법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”을 “「소하천정비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”으로, “당해년도별”을 “해당연도별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.

제4조 본문 중 “2개년도”를 “2년”으로,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조에 따라”로, “되는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[별표3]의 조정산식에 의하여”를 “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별”을 “회계연도별”로, “년도분은”을 “연도분은”으로, “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이내”를 “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모래등”을 “모래 등”으로, “6월이상이거나, 기타”를 “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”로, “규정에 불구하고 시장”을 “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등의 징수시기는”을 “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”를 “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3조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,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, 모래,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,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[별표2]의 8호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별표 2 제8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부과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등을 부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부당이득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이 조례에 따른 변상금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점용료등 산정기준 (제2조 관련)

구 분	산 정 기 준
1. 공작물 설치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)	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/100
2. 토지(소하천부지)의 점용	가.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/100 나.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 /100 다만,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. 다. 광업(골재채취 제외)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 다만, 소하천구역내의 토석, 모래·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. 라.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.75/100 마.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 바.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/100 사.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.5/100
3. 하천부속물의 점용	제1호에 준한다.
4. 유수의 점용	가. 발전용수 1일 100m³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. 농업용수 1일 1000m³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.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(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) 및 그 밖의 용수 :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

구 분	산 정 기 준
5. 지하의 유수채취	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.
6. 배수(주수)	가.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다목의 1/3 *월10,000m 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 나.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,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(주수)는 제외한다 제4항 다목의 1/4 *월 10,000m 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7. 토석·자갈·모래의 채취	가. 당해 도 및 시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, 모래·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/100 나.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·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로 한다. 다.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.
8. 죽목·갈대·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	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7호,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.
9. 스케이트장·유선장·도선장 및 계류장(유·도선의 모선을 포함하여 유선장·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) 운동장·풀장·대기장·탈의장(매점 포함)	토지가격의 5/100
10. 그 밖의 점용 및 사용	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

※ 비 고

1.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
2. 토지가격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(토지가격비준표)를 사용하여 산출한다. 다만,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.
3.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/12년으로 하고,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매 1일을 1/365년으로 한다.
4. 점용면적이 1㎡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 점용면적이 1㎡미만인 경우에는 1㎡로 본다.

[별 표 3]

점 용 료 등 조 정 산 식 (제 4 조 관 련)

산출 점용료의 증가율	납부할 점용료
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	전년도점용료+[전년도점용료×{10/100+(증가율-10/100)×300/1,000}]
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	전년도점용료+[전년도점용료×{13/100+(증가율-20/100)×100/1,000}]
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	전년도점용료+[전년도점용료×{16/100+(증가율-50/100)×60/1,000}]
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	전년도점용료+[전년도점용료×{19/100+(증가율-100/100)×30/1,000}]
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	전년도점용료+[전년도점용료×{22/100+(증가율-200/100)×10/1,000}]
500퍼센트 이상	전년도점용료+전년도점용료× 0.25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</u>	<u>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‘ <u>소하천정비법</u> ’ 제22조,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<u>토석, 모래, 자갈</u>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, 소하천 사용료의 <u>부과, 징수</u>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소하천정비법</u> 」 제22조에 따라 ----- ----- <u>토석 · 모래 · 자갈</u> ----- ----- <u>부과 · 징수</u> ----- -----.
제2조(점용료등의 산정기준) ① <u>점용료등</u> 은[별표1]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.다만, <u>1건만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</u>	제2조(점용료등의 산정기준) ① <u>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 · 모래 · 자갈</u>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(이하 “ <u>점용료등</u> ”이라 한다)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.-- <u>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</u> --.
②‘ <u>소하천정비법</u> 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부당이득금</u> 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<u>당해년도별 점용료등</u>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	② 「 <u>소하천정비법</u> 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<u>변상금</u> ----- ----- <u>해당연도별</u> ----- --.
제3조(점용료등의 감면) ‘ <u>소하천정비법</u> 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<u>점용료 등의 감면</u> 은[별표	제3조(점용료등의 감면) 「 <u>소하천정비법</u> 」 제22조제4항에 따른 <u>점용료등의 감면</u> 은 별표 2의 기

2]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.

제4조(점용료등의 조정)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[별표3]의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점용료등의 징수시기)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,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,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.

②토석, 자갈, 모래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,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

준에 따른다.

제4조(점용료등의 조정) -----
----- 2년 -----
----- 제2조에 따라 ----

-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-----.

-----.

제5조(점용료등의 징수시기) ① -----
----- 회계연도별-----

연도분은 -----

-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-----.

② ----- 모래 등 -----

-----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-----
-----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

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.

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,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징수)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.

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7조(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)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「소하천정비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,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,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, 그 허가에 특별한

한다)--- 따라 -----
--.

③ -----

----- 그 밖에 ---

----- 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-----.

제6조(징수) ① -----

----- 그 밖의 --

-----.

② -----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23조에 따른다.

제7조(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) ①-----
----- 다만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,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, 모래,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, 그 허가에 특별

<u>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</u> ②<u>[별표2]의 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.</u> 제8조(징수의 위임) <u>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출장소장 또는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u> 제9조(시행규칙) <u>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	<u>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</u> ② <u>별표 2 제8호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제8조(징수의 위임) ----- ----- <u>부과·징수</u>----- ----- -----. 제9조(시행규칙) -- <u>조례의 시행에</u> ----- -----.
--	---

관계법령

□ 「소하천정비법」

제22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(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·모래·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·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공용·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

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

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,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,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세법」

제103조의60(소액징수면제) 지방소득세(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)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소관 실·과		건 설 과
입 안 자	과 장	최 규 호
	담 당	김 강 콘
	담 당 자	한 상 우 (480-5353)